

의안번호	제221호
의결연월일	2023.12.01.

-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17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 : 2023. 11. 21.
- 상 정 일 자 : 2023. 12. 01.

제296회 예산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[환경과장 : 이종선]

가. 제안이유

- 「예산군 재무회계 규칙」이 「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「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의 인용 조례를 변경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나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인용 규정 현행화(안 제13조)
 - (현행) 「예산군 재무회계 규칙」
 - ⇒ (개정) 「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- 존속기한 변경(안 제14조)
 - (현행) 특별회계 존속기한 : 2023. 12. 31.
 - ⇒ (개정) 특별회계 존속기한 : 2027.12. 31.
-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문장 부호 등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7조,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범진)

- 본 조례 개정안은 존속기한이 2023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폐기물처리시설(소각시설) 준공에 맞춰 4년 연장하여 2027. 12. 31.까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,
-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생략

5. 토론 요지

- 없음

6. 심사 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